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4. 8.(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창훈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38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가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5. 검토의견

- 최근 낙시는 단순 생계수단을 넘어 국민레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낙시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해수부 추산 620만 명)
- 낙시 인구의 증가는 내수면의 낙시터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무분별한 낙시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과 유해성 미끼 및 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서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낙시 관리 및 육성법」('11.3.9. 제정, '12.9.10. 시행)에서 낙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현재 낙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35개의 기초지자체가 낙시 레저활동과 수산자원의 보호 간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용 수면(달성군 86개소, 한국농어촌공사 10개소) 등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43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놀이터,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1호)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5. 검토의견

- 최근 덩크족,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7천 가구 중 약 15%인 312만 8천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가구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자 비율은 28.2%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동물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펫팸족’, ‘펫코노미’ 등 신조어가 등장하였으며,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도 2022년 8조 원에서 2032년 20조 원으로 연평균 약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²⁾되며,
- 반려동물의 놀이 공간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산책과 외부활동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등 중요한 부분이나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조사기관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방식 등의 차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통계에 차이가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023.8.9.)

-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23.8 기준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123개소 조성 및 조성 추진 현황

지역	개소 수	반려동물 보유가구(수)	1개소 당 이용가구 수
서울특별시	22	498,113	22,642
부산광역시	5	184,282	36,856
인천광역시	5	194,387	38,877
대구광역시	2	120,096	60,048
대전광역시	2	80,156	40,078
광주광역시	2	74,499	37,250
울산광역시	4	59,242	14,811
세종특별자치시	-	18,494	-
경기도	39	862,173	22,107
강원도	7	113,644	16,235
충청북도	5	109,696	21,939
충청남도	5	157,360	31,472
전라북도	6	109,761	18,294
전라남도	5	136,952	27,390
경상북도	6	169,659	28,277
경상남도	8	199,496	24,937
제주도	-	40,952	-
계	123	3,128,962	25,439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40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주차장법」 개정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음부즈만지원단 ' 24년 자치법규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했으며,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칙(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노상주차장(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노외주차장(부대시설의 종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부설주차장(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주간 운영시간 확대(안 별표 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읍부즈만지원단 ' 24년 자치법규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읍부즈만지원단 ' 24년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면적을 총 시설면적의 40% 이내로 조정하도록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입지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지역 등에 건축·설치된 주차수요 유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법령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부지 인근 범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2년 79개 기초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6조(관리·감독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에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끝으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간 운영시간을 08:30~18:30에서 8:00~20:00로 확대 조정 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45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관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등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검토의견

- 2024년 8월에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건축 트렌드가 지상공원화로 주차장이 지하에 많아 전기차 화재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으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옮기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등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36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제6조)
- 환경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국가 및 타지자체와의 협력, 군민참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2021년 「환경정책기본법」(2021.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1.7.6.)의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 또한 상위법상 명칭인 ‘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체계와의 일치를 도모하였습니다.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641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정신질환자 및 관련 범죄의 증가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3년도 ‘국가 정신건강현황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수는 5,824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는 27.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에서는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2022년 63.9%에서 2024년 73.6%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2023년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023년 정신적장애피의자 비율이 1.1%, 강력범죄의 경우 3.4%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23.12.5.)으로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시·도별 24시간 대응센터 설치 및 협의체 활성화)하고, 외상 등 동반 정신질환자 상시 대응 인프라 확대(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정부에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지자체와 경찰이 공동 대응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상담부터 현장 출동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총 144개소이나 달성군의 관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9곳³⁾으로 정신질환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의료접근성 및 응급의료접근성 평가 결과 8개 구·군 중 가장 취약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대구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

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144	10	2	1	3	19	109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대구시사회서비스원 아름마을), 정신재활시설 2곳(달성정신 재활센터 해피하우스, 꿈이있는 사람들), 정신의료기관 5곳(대구정신병원, 이즈병원, sm정신과의원, 이미경정신과의원, 더감동정신과의원)
 4) 대구경북연구원(2022), 데이터 기반의 대구시 의료접근성 평가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42호
- 발 의 일: 2025년 3월 21일
- 발 의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2. 제안사유

-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에 대한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제12조제1항, 별표 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5. 검토의견

- 지난해 10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과 관련하여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목적 규정에 해당 조례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 구체적 수수료를 별표에 규정시 별표 등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